

## 2025년도 제1회 여수시의회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

2025년도 제1회 여수시의회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.

2025년 1월 7일

여수시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

### 1. 채용분야 및 인원

분 야	채용직급	채용기간	채용인원	담 당 직 무	근무처
사진영상 촬영·편집	지방행정 주사보 (일반임기제)	2년	1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의정 현장 홍보 사진·영상촬영·편집</li><li>의정전반에 대한 맞춤형 언론 홍보활동</li><li>언론취재활동 지원 및 의정활동 홍보지원</li><li>기타 해당분야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</li></ul>	여수시의회

### 2. 임용근거
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5조의5, 제27조, 제31조
-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3조의2, 제17조, 제21조의3, 제21조의4
- 「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」 (행정안전부 예규)
- 「여수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」
-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

### 3. 응시자격

#### 가. 공통요건
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,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 및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
- 응시연령 : 18세 이상 ※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
- 지역·성별: 제한없음
-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(외국인이 아닌 자)

#### 《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》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#### 《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》

-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.
1.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
  2.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
  3. 통신기기,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
  4.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
  5. 병역, 가점,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·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
  - 5의2.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
  6.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

《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》

-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  2.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
-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(이하 “비위면직자등”이라 한다)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1. 공공기관
 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  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
  4.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
- ※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

나. 자격요건 :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

채용분야	자 격 요 건
사진영상 촬영·편집	1. 학사학위 취득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.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.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<b>【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】</b>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민간기업(단체) 등 에서 영상 및 사진촬영 관련 업무(근무)경력

- ※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관련 분야 경력이 기재되어야 함
- ※ 관련분야 업무(근무)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**근무기간과 담당업무, 직위가 상세히 명시되어야하고**, 채용 후 수행예정인 주요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경력 이어야함.  
(불분명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)
- ※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**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**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(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제17조제5항)
- ※ 경력기간은 주 40시간 근무기준으로 하며 시간제 근무 경력인 경우에는 기준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(예: 4년간 주20시간 시간제 근무시 ⇨ 2년 인정)  
(불분명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)

## 4. 근무조건 및 보수수준

### 가. 근무조건

- 근무기간 : 임용일로부터 2년  
\* 해당 사업의 지속여부 및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5년 이내 연장 가능
- 근무시간 : 1일 8시간, 주 40시간 근무

## 나. 보수수준

-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 제34조(연봉 및 연봉한계액)에 따라 7급상당 일반 임기제공무원 연봉한계액 범위 중 **하한액** 책정
- 연봉 외 수당은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 의거 별도 지급
- 복무는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및 「여수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」 적용
  - \*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(실업급여)에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 (단, 최초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)
- 연봉한계액

(단위: 천원)

구 분	상한액	하한액	비 고
7급상당(일반임기제)	66,396	47,157	

## 5. 시험방법

### 가. 1차시험 : 서류전형

- 응시자의 자격 · 경력 등의 적합여부 서면심사
  - 서류전형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(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포함)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실시
    - ※ 이 경우 기존 접수된 응시원서 등 제반 서류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
  - 서류전형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

### 나. 2차시험 : 면접시험

-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
  - (평정요소)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

-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·품행 및 성실성
- ⑤ 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가능성

- (평정방식)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,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

## 다. 합격자 결정

### ○ 면접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

- 채용자격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심사를 통하여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음
- 임용포기, 합격취소, 임용결격사유,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자 중에서 차순위자로 추가합격자 결정할 수 있음
- 최종합격자로 선발되더라도 결격사유조치, 신원조사,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결과 등을 통해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합격을 취소함
- ※ 불합격 :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“하” 로 평정한 경우,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“하” 로 평정한 경우

## 6. 시험일정

시험공고	응시원서 접수기간	서류전형 합격자 발표	면접시험일	최종 합격자 발표
'25. 1. 7.(화) ~ 1. 17.(금)	'25. 1. 15.(수) ~ 1. 17.(금)	'25. 1. 24.(금) (예정)		일정 추후 공고

- ※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공고 :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/여수시의회 홈페이지
  - 시험일정,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
- ※ 합격자 발표 : 여수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 및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
- ※ 상기일정 및 합격자 발표일 등은 변경될 수 있음

## 7. 응시원서 접수

○ 접수기간 : 2025. 1. 15. ~ 1. 17.(3일간)

- 접수시간 09:00 ~ 18:00 (12:00 ~ 13:00 제외)

- 접수처 : 여수시의회사무국 총무팀

- 접수방법 : 방문(대리접수가능) 또는 등기우편 접수 ※택배 퀵서비스접수불가

□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(2025. 1. 17.)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

- 주소 : 59713 여수시 여서1로 101(여서동,여수시의회) 여수시의회 총무팀

- 봉투 겉표지에 “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 재중” 글자 표기

- 우편 접수 후 반드시 채용 담당자에게 사전 유선 연락 실시(061-659-5022)

- 우편 접수자의 경우 응시번호는 서류합격 발표 전까지 개별 통보 예정이며,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교부

- 우편 접수 시 응시수수료 지급용 우체국 통상환증서(‘받을분’ 부분은 미기재)를 제출

## 8. 제출서류

① 응시원서 1부 <별지 제1호 서식>

- 사진 :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(3.5cm×4.5cm) 1매(별도 제출)

- 응시수수료 : (7급 상당) 7,000원

※ 여수시 민원실에서 여수시 수입증지 구입, 우편접수시에는 우체국 통상환증서로 대체

② 이력서 1부 <별지 제2호 서식>

-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따라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,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확인 불분명한 경력은 경력기간에서 제외함

③ 자기소개서 1부 <별지 제3호 서식>

- A4용지 5매 이내, 경력 중심으로 작성

④ 직무수행 계획서 1부 <별지 제4호 서식>

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

- 대학원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·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

⑥ 관련분야 자격(면허)증 사본 1부(해당자에 한함)

- 응시원서 방문접수 시 반드시 원본을 지참하여야 하며, 원본으로 확인된 것만 인정함

- 응시원서 우편접수자는 면접시험 시 원본을 지참하여야 하며, 원본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면접시험 응시가 가능함

⑦ 관련분야 경력(재직)증명서 1부 (해당자에 한함)

- 발행기관(단체)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발급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반드시 기재
- 증명서에는 근무부서, 근무기간, 직책(직위), **담당업무, 전임 및 비전임 여부**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, 민간근무 경력의 경우 발행기관의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(사업자등록증 사본 등)를 함께 제출(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에 유의)
  - ※ 경력(재직)증명서 상에 **담당업무 반드시 기재 확인 후 제출(매우 중요)**
  - ※ **경력(재직)증명서에 담당업무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** 반드시 담당업무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(예) 근로계약서·업무분장 등)를 제출하거나 ‘경력사실 확인 증명서’ 별지서식 제7호> 추가 제출
- **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**(프리랜서,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인정)
- 경력기간은 주당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며, 시간제 근무경력인 경우에는 기준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(예) 2년간 주당 20시간 근무를 한 경우 인정되는 경력은 1년임)
- 회사 폐업 등의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기재사항 미비로 경력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
- 근무기관의 폐업 등의 사유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①~④ 모두 제출해야 함
  - ① 폐업사실증명서, ②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, ③ 소득금액 증명서, ④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서류(예) 근로계약서, 인사기록카드, 업무분장 내역 등 담당업무 내용 기재 필수)

⑧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 (보험가입 전체기간 발행)

- 경력으로 기재한 사업장에서의 보험자격취득일 및 상실일 내역이 나와야 함
- 국민건강보험공단(nhis.or.kr) 또는 근로복지공단 포탈서비스(total.kcomwel.or.kr) 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 \*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제출자에 한함

⑨ 주민등록 초본 1부(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)

⑩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<별지 제5호 서식>

⑪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<별지 제6호 서식>

- ※ 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(임용후보자는 제외)가 제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해 드립니다.

⑫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의견서<별지 제7호 서식>

⑬ 기타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응시자가 판단하는 자료(해당자에 한함)

- 포트폴리오 등

## 9. 기타 유의사항

- 여수시의회, 여수시의회인사위원회에서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채용시험에 중복하여 원서를 접수할 수 없음
-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.
-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, 누락, 연락불능, 자격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
- 제출한 서류가 위조변조되었거나 기재된 내용(학력, 관련분야 경력 등)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할 수 있음
- 모든 증명서는 원본(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) 제출이 원칙이나, 부득이한 경우 원본 지참 후 확인된 사항은 사본제출 가능하며, 공고일 이전 발행된 서류는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(증명서에 유효기간 기재) 내의 서류이어야 함
- 경력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
-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한글번역본(공증필)을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함
-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명서류에 대해서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- 시험공고 내용을 변경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여수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함
- 서류전형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(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포함)에는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함. 이 경우 기존 접수된 응시원서 등 제반 서류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서류전형 결과 적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을 경우에도 면접시험 실시함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\* 여수시의회사무국 총무팀(☎061-659-5022)